

영 등 포 구 의 회  
2004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2004. 12. 9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 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제출한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의 추진을 위한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 □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74명에서 1,275명으로 하고, 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249명에서 1,250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새로이 발생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
- 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경보발령
- 기반체계보호관련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명령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위험지구 설정
- 대피명령·강제대피조치·통행제한·응원·응급부담 등입니다

## □ 검토 내용

- 조례개정(안) 제출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으로 2004. 3. 11 법률 제7188호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 7.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자치단체기구·정원 보강지침을 시달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2004. 7 보정정원을 초과한 자치구만 정원 승인요청을 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구에서는 2004. 8. 4 담당부서를 치수과로, 보강 인원을 행정7급 1명으로 하여 정원 증원을 승인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2004. 9. 15 중랑구 행정9급 1명,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행정8급 1명의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정원을 승인 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순찰업무를, 총무과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전시 재난업무를, 치수과장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 재난업무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3명, 총무과장은 5명, 치수과장은 6명의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비해 재난의 개념을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인적재난 및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이 확장된 개념중 인적재난이란 테러집단 등에 의한 고의적 사고에 의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여겨지며 이는 이라크에 우리 국군을 파견한 것 등과 연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우리구의 정원현황은 표준정원 1,173명, 보정정원 1,208명, 현정원은 1,274명으로 우리구의 현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과 기존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과 간의 업무 조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에서 총괄 수행하는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지역안정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정원의 증원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 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 12. 9

보고자 : 김 찬 재

## 재난관리부서 현황

부서명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상 분장사무	담당 직원수	관련법규
감사담당관 (순찰안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련 종합계획수립</li> <li>○ 공공시설 및 건축물(공동주택, 노후 건물 포함)의 안전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의 위험시설물 지역지정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재난대비교육,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li> </ul>	3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총무과 (민방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민방위계획수립</li> <li>○ 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li> <li>○ 민방위대 설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5	민방위기본법
치수과 (치수팀 , 하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대책운영</li> <li>○ 재난관리계획 총괄 조정</li> <li>○ 안전대책위원회, 사고대책본부 등 구성운영</li> <li>○ 재난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정보 전달, 공조체계 구축</li> <li>○ 재난의 복구 및 수습대책총괄 조정</li> <li>○ 재난관리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li> <li>○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및관리</li> </ul>	6 (자연재해 : 4) (시설재해 : 2)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